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

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
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
지급하는 매입비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
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

건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
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